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최수진 · 백종현  
박덕흠 · 안철수 · 서미화  
김소희 · 김상훈 · 유용원  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, 도검류, 폭발물,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,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장애인,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 등).



##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교통약자의 보조기기 휴대) ① 교통약자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(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.

-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통약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항공기내 반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